

트러스톤 재형 다이나믹코리아 3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 코드: AG123)

투자 위험 등급
5 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 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 롱숏전략으로 운용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트러스톤 재형 다이나믹코리아 3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약 70%를 국내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주식 롱숏전략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	-	0.700	0.350	-	74	151	231	402	897
	(주 1) ‘1,000 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6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25.03.06 ~26.03.05	최근 2년 24.03.06 ~26.03.05	최근 3년 23.03.06 ~26.03.05	최근 5년 21.03.06 ~26.03.05	설정일이후~ 26.03.05			
	재형다이나믹 코리아 30(%)		17.65	9.77	6.32	3.94	3.24			
	비교지수(%)	2013.3.6.	2.44	3.27	3.62	2.37	2.30			
	수익률 변동성(%)		4.56	3.72	3.57	3.75	3.15			
(주 1) 비교지수 : KIS 국고채 1~2년×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구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운용펀드 기준)										
운용전문인력	(2026. 9. 30. 기준 / 단위 : 개, 억원, %)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혼합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하현진	1979년	주식책임 운용역(이사)	18	2,294	7.19	8.11	21.42	17.19	13년 6개월	

	최경철	1987년	주식부책임 운용역(차장)	1	100	-	-	11년
	윤희식	1995년	주식부책임 운용역(대리)	-	-	-	-	3년 4개월
	김성현	1996년	주식부책임 운용역(대리)	12	1,506	8.71	8.87	4년 9개월
	김동현	1982년	채권책임 운용역(이사)	20	4,830	-	-	16년 5개월
	문성호	1977년	채권부책임 운용역(이사)	24	6,978	-	-	19년 9개월
<p>(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p> <p>(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p>·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p>·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매도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 차입 및 매도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지만, 차입한 주가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증권차입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매수전략만 구사하는 전략에 비하여 원금손실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입 방법	· 17 시 이전: 2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 17 시 경과후: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방법	· 17 시 이전: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 영업일에 지급 · 17 시 경과후: 4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 영업일에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table><tr><th>과세대상</th><th>과세원칙</th><th>세율</th><th>과세시기</th></tr><tr><td>투자신탁</td><td>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td><td>-</td><td>-</td></tr><tr><td rowspan="2">수익자</td><td>비과세 대상</td><td>계약기간 7년 유지 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td><td>농어촌특별세 1.4%</td><td>-</td></tr><tr><td>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td><td>원천징수</td><td>15.4% (지방소득세 포함)</td><td>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또는 양도하거나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 시 감면 받은 세액 추징</td></tr></table>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수익자	비과세 대상	계약기간 7년 유지 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1.4%	-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원천징수	15.4% (지방소득세 포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또는 양도하거나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 시 감면 받은 세액 추징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수익자	비과세 대상	계약기간 7년 유지 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1.4%	-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원천징수	15.4% (지방소득세 포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또는 양도하거나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 시 감면 받은 세액 추징																
	□ 비과세 대상인 경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은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② ①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펀드 가입시 국세청 확인을 거쳐 비적격자로 통보 받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가입금이 금지될 수 있으며, 다른 펀드로 이동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2015.12.31.까지 [가입신청 이후 익일 매수하므로 2015. 12. 30. 기준시간 이전까지 신규 신청(자금 납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저축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7년이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10년) 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연장 전에는 7년, 연장 이후에는 그 연장한 기간까지)에 해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 양도가 없어야 합니다.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계약기간 7년 유지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다만, 재형저축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받은 이자·배당소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10)가 부과됩니다. ※ 최초 계약기간 7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 등의 인출시 연장한 기간 및 연장 이전 7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됩니다.																				

감면세액 추징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특별해지)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특별해지하려는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div>□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 15.4%(지방소득세 포함)</div> <p>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p> <div>※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재형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div>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트러스트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630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truston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효력발생일	2026. 10. 28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36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	